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박상혁 · 김우영 · 진선미
김승원 · 김한규 · 한병도
전현희 · 한민수 · 이연희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

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중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의 업종 및 가맹점사업자”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을 “등록하거나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변경등록 신청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날 또는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직영점 운영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u>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u> 사항을 포함한다)	나. ----- -- <u>가맹사업의 업종 및 가맹점사업자</u> -----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u>정보공개서 등록</u>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정보공개서의 등록</u> 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 ----- <u>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u> ----- ----- <u>정</u> <u>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u>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날 또는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직영점 운영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	--